

이사장님...

이유미 팀장입니다.

통합복권관련법안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시죠?

오늘 구체적으로 확인해봤더니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12월 9일(화) 최종 법안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사위 심의가 있구요...

이연숙 의원실을 통해 확인해보니까 현재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추세라 이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대로 통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여성계 청원서는 공식적으로 상정되어 이를 직접 소개의원이 설명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지는 않았으나, 의원들이 여성계 청원서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찬 의원실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부위원회 '복권및복권기금법안(대안)' 내용 전문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구요... 당초 정부안과 달리 조정된 부분 중 여성계 의견과 관련된 핵심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별도의 복권위원회 설치
- ② 복권위원회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 위촉
- ③ 23조 3항 각호 중 (여성계 청원내용은 아니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여성관련 배분대상 명시

단, 2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관리주체는 26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배분신청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여성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부에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은 총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당장은 재단을 통해 배분되지는 않더라도 널리 보면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여성들을 위해 정말 맹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 사전에 이번처럼 움직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복권기금이 여성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당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날씨가 쌀쌀한데, 특히 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는 소정의 상금(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라 함은 당첨금 외의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라 함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관광진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①복권위원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을 발행(위탁 또는 재위탁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금액 또는 판매금액, 발행방법 및 발행조건을 정한다.

③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금액 또는 판매금액, 발행방법 및 발행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복권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제한 등) ①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을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①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지 못한다.

②복권위원회(위탁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복권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다.

③온라인복권사업자(복권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 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매체·광고문구·광고비용·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연간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권사업자는 복권의 구매자가 당해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이를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당첨금의 지급 등) ①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복권 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첨금의 합산액이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동일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당첨금 구조 및 1매당 가격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해 당첨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④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인 쏘복권, 추첨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90일간, 즉석식인쏘복권 및 즉석식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복권유통비용의 제한 등) ①복권의 종류별 복권유통비용은 종류별로 판매된 복권의 총수에 당해 복권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등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등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이 법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④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복권위원회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금액 또는 판매금액, 발행방법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당첨금의 구조 및 구조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9.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10.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1급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파반수는 공무원이 아

년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복권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복권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수렴) ①복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복권관계 서류, 장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이 법에 정한 것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 회의 및 사무처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파견인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는 복권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
2. 근로자복지기본법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 산림법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기술개발촉진법
9. 주택법
10. 지방재정법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로 보는 자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체결된 계

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권유통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 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5년도 연간 복권발행계획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005년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005년도 복권기금사용신청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재원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중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복권수익금의 배분) 제주도는 관광진흥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복권수익금의 배분) 공단은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복권수익금의 배분)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별표]

기금·기관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제23조제2항관련)

기관 및 기금	사 용 용 도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5.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행사 지원사업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1조 각호의 사업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1. 국민주택 건설사업 2.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3.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 중소기업창업지원 2.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 3.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 4. 산업기반조성지원
6.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 2. 지역개발사업향상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업
9.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림법 제107조 각호의 사업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